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66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황명선ㆍ이기헌ㆍ민병덕

송재봉 · 황정아 · 한민수

김우영 · 염태영 · 이해식

서미화 · 한준호 · 조계원

김성회 · 장경태 · 박수현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·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, 군내(軍內)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(36개월)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「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」에 따라 군이 의무장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,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,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제1호 등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안」(의안번호 제286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"사관학교"를 "사관학교 또는 국군의무사관학교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제5호 중 "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"를 "육군3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군의무사관학교"로 한다.

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의3.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제4학년생

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"국군간호사관학교"를 각각 "국군간호사관학교, 국군의무사관학교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복무의 구분) ① (생 략)	제6조(복무의 구분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	2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으로 한다.	
1. <u>사관학교</u> 를 졸업한 사람	1. <u>사관학교 또는 국군의무사</u>
	관학교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	7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으로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사관학교, <u>육군3사관학교 또</u>	5 <u>육군3사관학교, 국</u>
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	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군의
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	무사관학교
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	
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	
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	
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	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	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
제11조(장교의 임용)	① 장교는
다음 각 호의 어느	. 하나에 해
당하는 사람 중에서	임용한다.
1.・2. (생략)	
<u>&lt;신 설&gt;</u>	

3. ~ 8. (생략)

-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.
- 1. ~ 3의2. (생 략) <신 설>

4. (생략)

-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저 (생 략)
  - ② 제11조제1항제1호·제2호·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 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 로 할 수 있다.
  - 1. ~ 3. (생략)
  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
제11조(장교의 임용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
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
격한 사람
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
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3의3.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제4
학년생
<u>학년생</u> 4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
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가. 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 또 교,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

나.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 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 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 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

4의2. ~ 5. (생략) ③ ~ ⑤ (생략)

가
국군간호사관학교, 국군
의무사관학교
나
국군간호사관학교, 국군의
<u> 무사관학교</u>
4의2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